

제354회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9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1월23일(목)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 1.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의 건(계속)
 - 기본권 2

상정된 안건

- 1.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의 건(계속)
 - 기본권 2 1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9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 논의자료 중 일부 개헌 쟁점의 ‘이견 없음’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지적이고 해서 논의 결과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으로 표현하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고, 또 찬반 의견도 있고 한데 크게 논의가 진행이 안 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없었거나 또 어떤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주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다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배포된 자료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도 자문위원회 기본권·총강분과

위원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1.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의 건(계속)
 - 기본권 2

(14시13분)

○위원장 이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기본권분과 김선수 위원님께서 기본권분과 논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그러면 조금만 계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좀 듣고……

최인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시간은 항상 3분을 일단 넣어 주세요, 끊지는 않겠지만.

○최인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특위에서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오늘 각종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함께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그런 요지로 보도도 되고 또 몇몇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올해 대선 전에 있었던 일을 잠시 저는 상기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3·4월경에 대선을 불과 한두 달 앞두고 지금은 야당이 된 3당이 합의해서 소위 오스트리아식 대통령직선 내각제에 합의하고 또 5월 9일 날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그것을 대선과 함께 개헌하자라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년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불과 올해 대선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규 선거와,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개헌식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그런 발언이고 주장이 아니냐. 대선과 함께 개헌을 주장할 때는 언제고……

또 사실상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내년에 지방선거와 함께 하겠다고 국민적인 동의를 받은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간주하고 생각합니다만, 또 다수 국민들이 이번에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만 올 초 주장하고 지금의 주장이 너무나 달라서 접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어리둥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략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다 하는 점을 상기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남은 시간이 좀 있어서, 어제 제가 발언 기회를 받지 못해서 주장을 못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부마민주항쟁도, 만약에 5·18 또는 6월 항쟁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면 항쟁의 성격이나 특히 18년 유신정권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린 계기라는 엄청난 역사적 성과가 있기 때문에 부마항쟁도 헌법 전문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손을 드셨는데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일종 위원 예.

○위원장 이주영 발언하시지요.

○성일종 위원 사실 상임위의 법안소위가 있어서 어제는 제가 잠깐 들르기만 했지 제대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까지 법안소위가 아주 쟁점되는 게 많아서.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양성평등 문제, 오늘서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사무국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소위에서도, 전체위에서도 여러 번 거론했고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뜨거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마치 실수인 양 지금서, 하루 전에서야 이게 수정됐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어떤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고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를 비롯한 김성태 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개헌이 정파나 정쟁의 요소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헌이 야말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집을 짓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 중차대한 일인데…… 작년에 이 개헌 논의가 있었을 때, 사실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국가적 혼란을 겪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었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 있어서 이게 왔으니 원 포인트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권력집중, 승자독식에 대해서 우리가 장치를 하고 가자, 그래서 이 나라의 혼란을 막아 보자, 그동안 나왔었던 모든 대통령들이 다 불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그때 급하게 한번 해 보자고 한 건데 그것들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보니까 이게 지방선거도 있고 투표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좀 더 잘해 보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이야말로 우리가 정파를 떠나고 또 각 당의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 본질을 보고, 우선 권력구조에서부터 지금 기본권까지 전체를 다 함께 손봤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에는 다 동의하실 텐데, 좀 더 여야를 떠나서 함께 숙고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리는 그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기 위원님도 손을 드셨는데,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용기 위원 예.

○위원장 이주영 그러면 되도록이면 좀 짧게 해

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개헌특위 전체 앞으로의 의사진행과도 관련이 있고 또 어제 본 위원이 본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발언들이 지금 되고 있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말 빨리 권력구조 중심의, 앞서 존경하는 성일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만이라도 개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또 반대해서, 지금의 여당이 반대를 해서 안 됐고, 지금 와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또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을 하겠다. 그리고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등이 언론을 통해서 여당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질인 권력구조 문제는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같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지방분권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게 바로 정략적이고 선거공학적이라고 비쳐질 소지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늦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겠는데, 선거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개헌에 국민들의 관심과 어떤 고민과 결단이 집중될 수 없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략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거적인, 정략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개헌 문제에 우리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영 위원님들 말씀을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수 자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김선수 기본권분과 자문위원 김선수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할 내용은 오늘 논의 예정인 참정권부터 기본의무까지 부분에 대한 쟁점사항 중에서 저희 분과 의견이 소위 심사결과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냥 그 자료에 '동의함'으로 표시했으니까 생략하고, 다만 소위 내에서 의견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소위 심사결과와 분과 의견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분과에서는 의견을 모았는데 소위에서 쟁점사항으로도 삼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과의 논의사항들을 국민의 의사로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참정권 부분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 신설에 분과에서는 모두 합의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나 거부 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수단 마련의 근거가 돼서 국민의 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정권 부분에서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제 조항들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10차 개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민주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직접민주제 관련 사항은 기본권분과뿐만 아니라 자문위 전체의 관심사항이어서 합동회의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동회의의 결과를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권,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 조항을 기본권 조항에서 참정권 부분에 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헌법개정 국민발안권은 현행과 같이 "헌법개정" 장에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동 요건에 있어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1, 20대 총선에서 약 4200만 명이었으니까 4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다만 헌법개정안의 경우에는 규범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그 2배인 100분의 2,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약 84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로 의결할 요건에 대해서는 최소투표수 요건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소환의 경우에 3분의 1 투표 이상의 요건을 뒀더니 투표

율이 낮아서 아예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최소투표율 조건을 두지 말자는 의견도 아주 강력하게 제기됐지만 그래도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적어도 선거권자 4분의 1, 그렇게 따지면 약 105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것을 의결 요건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했습니다.

헌법은 그 배로 과반수가 투표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는 것을 의결 요건으로 했습니다.

그 외 직접민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합동회의 결과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가장 핫이슈 중의 하나가 영장 신청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다수의견은 검사로 독점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장 신청의 주체는 영장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해서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되 검사 이외의 자가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단서규정을 두자는 그런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부분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거기에 대한 위헌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심사결과는 오늘 배포한 자료는 저희가 못 받아서 그전에 정리한 소위 심사결과에 보면 ‘법원으로 변경하는 데 이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다수 의견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위해서는 101조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관련하여서 군사재판 축소 부분에 관련하여서 저희 자문위에서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확히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에 평시에 군사법원 폐지를 위해서 제110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사절차와 재판에 관한 원칙과 관련하여 불구속수사 원칙 그다음에 부당한 지시나 간

섭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검사의 기소의무 조항은 법률사항이지 않느냐,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인륜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의 구체적인 인권 기준을 반영해서 이것을 명시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서 교육을 받을 권리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생학습권을 같이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대학자치’로 표현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로의 권리 부분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명시에 대해서는 저희 분과에서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은 유엔의 사회권규약, 유엔의 제반규약과 ILO의 협약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대법원 판례도 기준을 명확하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의 권리”라는 용어를 ‘일할 권리’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현재가 “근로의 권리”를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일할 권리’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특히 고용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섭할 여지를 남겨 두는 차원에서 이런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극화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용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의무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무기고용 및 직접고용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노동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근로기준법 4조에 규정된 노동조건을 노사대등 공동결정원칙 이 부분을 헌법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과 생활 균형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일할 권리 조항에서 명시하는 것이 체계상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을 성평등 조항에 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드시 이게 가족생활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성평등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어서, 일하는 사람의 모두에게 관련된 일이어서 여기에 두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삼권과 관련해서 ‘노동’과 ‘노동자’로 용어를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로 그게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삼권 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ILO나 유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역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을 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필수공익기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여부는 현행 37조 2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삼권을 자유권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3권 중에 적어도 단결권은 자유권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삼권에 있는 조항 형식과 관련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세 권리를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독자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별개의 항으로, 3개의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권 또 대표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은 프랑스 헌법을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규정하면서 그 목적으로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라고 해서 현행보다는 목적을 좀 확대해서 단체행동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넓히는 의도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보았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권, 문화생활 향유권 이런 부분들을 한 조항에 모아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에 같이 규정하는 형태로 저희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고지받을 권리는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고지받을 권리를 개별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지금 현재도 있는 조항이고 그걸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신체장애자 표현은 유엔에서 1970년대에 ‘디스에이블드 퍼슨스(disabled persons)’라는 용어를 쓰다가 2006년인가요 장애인권리협약 체결하면서 ‘퍼슨스 위드 디스에빌리티스(persons with disabilities)’라고 변경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개인적 모델을 극복하고 사회적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장애인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disabled persons’하고 이게 혼동이 되어서 저희 분과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용어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로 아까 2항에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3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4항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5항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이 이 사회권 보장을 충실하게 하는 의미에서라도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권은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 등에 비추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환경권 조항을 국제적인 흐름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론을 반영해서 대폭적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권을 ‘함께 누릴 권리’로 명시해서 집단적 권리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무는 별도 조항으로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체 보호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항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 분과 내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 별도 조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을 했고, 다만 어린이·청소년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등이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하고 있어서 용어는 아동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

땡졌는가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본 의무 부분에서 국민의 헌법 수호 및 법률 준수 의무, 자유와 권리남용 금지 의무 이런 부분은 권리에 당연히 내재적으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헌법 개정의 계기에 의무를 확대 규정하는 것은 개헌의 취지에도 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징총병역을 강제 받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헌법적으로 해결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병역 의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징총병역 의무만 거부하고 다른 형태로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에 있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는 부분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0차 개헌의 역사적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기본권 강화를 반영하는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히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개헌 특위의 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당 간사님들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 모두 아마 헌법 교과서에 이름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종섭 위원님 계신데, 헌법학 교과서 개정판 내면서 거기에 이번 10차 개헌의 경과 설명하면서 이 개헌특위 구성이 어떻게 되었고 그 위원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교과서에까지 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개헌특위 위원님 모두 헌정사에 길이 남을 그런 업적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이름 다 남아야지요.

○金成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의사진행발언?

○金成泰 위원 예.

○위원장 이주영 토론은 지금 들어갈 텐데.

○金成泰 위원 어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좀……

○위원장 이주영 아,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요?

○金成泰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주영 예.

○金成泰 위원 방금도 우리 자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 과정에……

제가 어제 분명히 질문을 드렸고 왜 이 과정이……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우려를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개헌자유발언대에 대부분 이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가 다른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염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헌특위 홈페이지에도 주요 의견이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성평등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우려,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다.

이렇게 상당한 국민들의 여론이 대다수인데, 이 용어를 쓰는 데 대한 우려를 우리 소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또 지역 공청회에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전체 개헌특위 (상세)하고 (요약)을 보면……

47쪽의 제목이 왜 ‘성평등’으로 이렇게 용어가 통일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된다고 어제 지적을 했고 오늘 또 성일종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것의 교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어제 제기한 문제였고, 오늘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지금 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상세 자료 47페이지지요?

○金成泰 위원 예.

○위원장 이주영 어제는 ‘성평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바꿔 가지고 ‘양성평등’으로 고쳐 놓았는데……

○金成泰 위원 고쳤습니까?

○위원장 이주영 예, 오늘 배포된 자료 한번 보시지요.

○**金成泰 위원** 경위를 한번 설명 들었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반대하던 것을 해명도 없이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는지, 이 과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영** 예, 나중에 수석전문위원이 가서 해명을 좀 해 드리세요.

○**金成泰 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저쪽 발언대에 앉아서 말씀을 좀 드리세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저희들 개헌대토론회 자료를 만들면서 제기되었던 문제고요. 오늘 새로 나누어 드린 자료는 ‘양성평등’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전번 소위원회 논의했던 그 자료를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성태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경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泰 위원**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성평등’ 용어 대신 ‘양성평등’으로 전체 다 빠짐없이 대체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주영** 예, 그렇게……

○**金成泰 위원**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위원장 이주영**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그렇게 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영** 예, 말씀하세요.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지금 물론 시작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논의 과정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저에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주영** 나중에 또 기회를 잡아서 말씀하시지요.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영** 이 부분은 좀 의견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양성평등’으로 표시하는 게 맞는지,

또 이것을 ‘성평등’으로 바꾸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균형 있게 자료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헌법 조문 순서에 따라서 개헌 쟁점별 논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했던 제1소위 담당 전문위원 원래 소속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인데 오늘 법사위 회의 소집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는 일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우선 1소위를 담당했던 심의관께서 보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심의관 이지민** 심의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28페이지, 참정권입니다.

먼저, 행정요구권 신설입니다.

현행 헌법은 행정요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신설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요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한 후 추후 논의하자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를 통한 청원규정 삭제 논의입니다.

현행 헌법은 청원의 방법을 문서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공감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국가의 통지 의무입니다.

현행 헌법은 청원에 대해서 국가의 심사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심사 후 국가가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도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의 통지 의무를 명시하자는 데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공감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지금 심의관께서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 계신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 부분은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요약 보고자료 29페이지부터지요?

○**입법심의관 이지민** 예.

○**위원장 이주영** 29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보고하십니까?

○**입법심의관 이지민** 31페이지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31페이지까지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입법심의관 이지민** 적법절차의 원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적법절차 원리 적용범위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절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행은 사법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 절 구분 없이 신체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등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절을 별도로 신설하지는 않되 사법절차 관련 내용을 한데 모아서 규정하자는 데 의견이 대체로 모아졌습니다.

다음, 현재 신체의 자유 조항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리를 신체의 자유 조항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법절차 원리를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37조에 명시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영장주의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장 신청 주체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입니다.

현행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로 명시된 검사를 삭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반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다음, 현행 12조와 별도로 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규정을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호인 조력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변호인 조력권 확대입니다.

현행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법절차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절차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셨습니다.

다음, 국선변호인 선임권 확대 여부입니다.

현행법상 형사피고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형사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대에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 의견을 표시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지금 보고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헌법상에 명시하는 문제인데요. 헌법상의 법체계를 보면 이것이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국민의 권리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영장청구를 검사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것은 검사의 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헌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체계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지요. 이것은 형사소송법이나 관련법에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문위원께서도 아마 처음에 발표하실 때 검사만이 청구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그랬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지금 오늘 헌법 개정하는 데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번 헌법체계의 핵심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체포·구속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 영장청구의 절차나 주체 문제를 헌법상 국민의 권리 조항에 넣는 것은 헌법체계상으로도 일단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헌법상에서는 이것을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고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일 위원** 헌법에 영장청구 관련해서 검사 조항을 두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또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영장 청구 이외에 수사권을 놓고 경찰과 검찰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영장 부분을 헌법에 두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 플러스해서 과연 이것을 고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느냐.

사실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우리가 어떤 헌법과 법률 조항을 고칠 때에는 그에 관한 충분한 필요성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현 상황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배제하고 모든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사법경찰관은 국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고 환경청, 국세청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기관에게 다 영장청구권을 줄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지금 검사가 영장청구를 직접 해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95%의 사건은 사법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고—영장을 신청하는 것이지요.—그리고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것은 5%, 그래서 95%의 영장 신청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이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사건이 한 5%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통제가 좀 미흡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사가 직접 영장청구하는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지……

지금 문제는 검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서 최근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또 저희 당 의원들은 불만을 넘어 정말 엄청난 반감을 갖고 오늘 대검찰청을 향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아무리 밍다고 해서 범질서를 흔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영장청구권에 관한, 영장심사에 관한 이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이 조항을 없애든지 해야지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법경찰관에게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의미인지, 그러려면 사법경찰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논의하고 대비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경협 위원 잠깐 보완을……

○위원장 이주영 김경협 위원님 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지금 여기에서 영장청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검사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법경찰관 어디까지 부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논란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 헌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가 이런 것입니다.

(이주영 위원장, 박병석 위원과 사회교대)

여기는 지금 국민의 권리, 사법절차에 관한 권

리를 규정하는 헌법의 법체계인데 여기에다가 검사의 권리를 마치 그냥 꿈수로 집어넣듯이 넣어가지고 법체계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헌법에서는 이것을 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영장청구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든지 필요에 의해서 그때 충분히 검토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교일 위원 저도 발언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다시 말씀하시게요?

○최교일 위원 예.

지금 영장청구 조항의 문제는 권한의 문제,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재판한다, 법원의 권한 문제라기보다도 그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것이고요. 이 영장청구의 문제도 말하자면 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검사의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영장 없는 구속권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수립되면서 다시 경찰 권한이 강화되면서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국민의 체포·구속에 관한 절차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인권보호 절차에 관한 문제이지 누구의 권한을 규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강창일 위원님 하신 뒤에 정종섭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비슷 비슷한 얘기인데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삭제 이 문제가 헌법체계에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헌법에 그런 것을 넣는 것은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것은 빼고 형사소송법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 우리가 검사가 영장청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법답게 법을 만들자 이런 식의 얘기에요.

그런데 오해들을 해 가지고서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아마 자문위원님들 말씀도 그렇지요?

검사가 영장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얘기 아니지요, 그렇지요?

○자문위원 김선수 예, 현행 형사소송법……

○강창일 위원 으로 처리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누더기 같은 이상한 헌법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정중섭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鄭宗燮 위원 김선수 자문위원님, 간단한 질문 때문에 그런데……

청원권 규정 26조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할 때 “문서”를 삭제하자. 예를 들어서 이 문서가 종이문서만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방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걸로 나중에 청원법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법률에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헌법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이 정하는 내용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원을 할 때 구두로 청원하는 것, 이것은 안 될 거란 말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근거가 남아야 되는 거고 청원하는 사람을 특정만 하면,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 우리가 모바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청원하는 사람 누가 한다고 특정이 되고 또 어딘가 근거가 남아서, 국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청원했다, 이것만 남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런 의미가 아닌 의미가 여기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이 내용이 자료상에 상세한 게 없어서 지금……

○위원장대리 박병석 김선수 자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김선수 지금 소송제기도 구두제소의 방법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두로 제소를 하면 법원 사무관이 제소한 내용을 기재해서 조서 작성하고 그것을 소장으로 대체하듯이 혹시

청원 부분도 법에 됐을 때 구두청원도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여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에서 그 부분을 구체화할 때, 방법을 구체화할 때 구두청원까지도 할 것인지 부분의 결정을 국회에 남겨두는 의미를 갖습니다.

○鄭宗燮 위원 그러니까 청원법에서는 그것을 구체화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문위원 김선수 예.

○鄭宗燮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이태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태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병석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규 위원 영장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 상식으로는 영장을 청구하는, 영장은 두 종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이 있고 하나는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 이 두 부분도 다 검사가 지금 전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구할 적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단계, 검증을 거쳐서 인신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사의 어떤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신문기사나 이런 여러 기사들을 봤을 적에 과거에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찰의 어떤 그러한 신청을 검찰이 적당한 이유 없이 기각하는 보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런 수사는 검찰이 관련되었을 적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거부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신구속영장은 둘째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양한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영장청구의 주체를 헌법에 담는다면 이후에 그런 부분을, 하위법령에서 논의를 다양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헌법에서 이 부분 명시하는

것을 빼고 나중에 제대로, 영장청구 부분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인신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 차이점을 둘 필요는 없는가, 이런 부분을 법률 개정 과정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영장청구 문제는 저희 2분과 정부형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확실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신구속영장은 굉장히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압수수색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압수수색을 안 당해 봤지만 당해 본 사람 말에 의하면 인신구속 못지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개인에 대한 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헌법에 들어 있는 것이 불필요하게 있다, 하위법에서 하면 된다 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헌법에 이미 있는 헌법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함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보다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자문위원님들께서 꼭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지요?

조소영 자문위원님.

○자문위원 조소영 아까 자문위원 보고서 보고해 주실 때 저희 분과에서 유일한 소수의견이 저입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자고 얘기하는 분들은 대체로 세 가지 의견이세요.

하나는 헌법적 체계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는 비교헌법적 사례가 없다, 세 번째는 이거는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비교헌법 사례가 없다는 얘기는 어느 나라의 헌법이건 그 나라의 고유한 헌법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따라서 참고 사례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오히려 법체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걸 검사의 권리다…… 검사는 통치기관입니다. 구조예요. 권력구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

는 건 권리가 아니고 권한입니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인신구속이 함부로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권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규정으로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 조항을 없애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김선수 위원님도 그러셨고 검찰의 정치화가 무섭다,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는 기소를 안 하더라, 이 문제 때문에 제 소수의견의 밑에 보시면 단서조항을 단 겁니다.

정치검사가 검사의 몇 %가 될까요? 저는 아주 평범한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영장청구를 가지고 있는 권한이 모든 사법경찰관, 모든 검찰……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더욱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었던 현행 헌법의 조항을 삭제하는데는 그만큼의 고민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동반되는 게 지금 뒤에 따로 떨어뜨려 놓으셨는데, 2014년 개헌위 자문안에서 여전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유지하되 기소를 꼭 해야 되는 조항을 넣자라고 해서 검사의 기소의무조항을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다수 의견이 얘기하시거나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없애신다면 기소의무조항이 따로 있어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삭제를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를 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검찰 개혁을 검사의 영장청구권 권한을 없애으로써 이루겠다, 이거는 다른 층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박태순 자문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문위원 박태순 저는 사법 절차가 아니고요, 저희들 자문위원들은 직접민주제 관련된 것을 참정권의 내용으로 보고 참정권에서 다룰 것을 어제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행정실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내용 보시는 것처럼 전문위원의 안에는 직접민주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 어디에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직접민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선수 자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합동회의를 통해서 전체 자문위원회 의견을 대체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정권 조항에서 직접민주제에 관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발표를 드렸으니까 논의가 좀 충실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부터 몇 쪽 사이지요, 심의관님?

○**입법심의관 이지민**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예, 32쪽부터 36쪽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입법심의관 이지민** 32페이지 라. 재판권을 받을 권리입니다.

먼저, 법원에 의한 재판권을 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한 재판권을 받을 권리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관’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자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마.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입니다.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범위를 축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전시·비상계엄 중 헌법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국가배상청구권입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입니다.

첫 번째,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입니다.

현행은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로 위원님들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국가 재정의 한계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구체화 법률이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수사와 재판에 관한 원칙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 수사·재판에 대한 부당한 지시·간섭 금지를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 중요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기소를 의무화할 것인지가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당연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를 헌법에 규정할 사항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심의관님 설명이 끝났고요.

김경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님 마이크 넣어 주세요.

○**김경협 위원** 지금 이 조항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앞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의견 중에 영장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장이 타당하게 발부가 되느냐,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보호되는 것이지 그것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영장청구 사례를 보더라도 검찰이 2015년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23.4%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신청에 따라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16.7%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영장청구 권한을 남용한 가능성이 훨씬 더 검찰 쪽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 자체가 여기 헌법 체계에 들어 있는 국민의 사법적 권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누가 청구하는 것이 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지의 문제는 나중

에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나 이럴 때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면 될 문제고요. 헌법상에서는 지금 이 조항은 헌법체계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이상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돈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경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한테 기각되는 게 적다는 것은 검사를 거쳐 가기 때문에 아마 신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일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경찰이 단독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검찰이 단독적으로 신청하는 것만큼의 기각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이 조항을 빼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걸맞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미루어서 경찰이 검사를 거쳐서 신청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을 빼게 되면 ‘경찰이 신청한다’로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경찰이 단독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검찰의 기각률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다, 이중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낮게 나오지 않는가 하고, 문제는 수사하고 기소 문제인데 대체로 수사·기소가 구분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영장청구의 기본적인 준비는 다 경찰이 합니다. 그러나 검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한 말씀만 짚막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예, 김경협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김경협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에 이게 빠지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이게 삭제됐다고 그래서 검찰이 청구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현행법에는 검찰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제는 세계의 어느 나라 헌법에도, 미국·일본·독일·프랑스 어느 나라에도 헌법에다가 검사의 영장청구의 주체를 넣는 헌법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설명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관님께서 다음 몇 쪽부터 몇 쪽이십니까?

○**입법심외관 이지민**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예, 설명하십시오.

○**입법심외관 이지민** 사회적 기본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의무교육 확대 여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확대·세분화하여 규정할지 여부, 학교교육 진흥 추가 여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육재정 관련 규정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개진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의 의무를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39쪽, 근로의 권리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고용증진·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한 방법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두 번째, 근로의 의무를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대상에 의사자의 유가족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인데, 의사자 유가족을 추가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자·연소자의 보호규정을 ‘평등’ 절로 이동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여성은 평등 측면에서 규정하되 아동은 분리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고령자 고용 보호규정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문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노동가치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헌법에 명시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삼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 ‘노동자’로 변경할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 원칙상 ‘권리를 인정하고 법률로써 제한한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필수공익기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로삼권을 자유권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 조항으로까지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돼 왔는데요. 헌법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즉 인간이 사회활동 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본적 권리의 핵심은 결국 노동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노동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존중받고 보상받는 것이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고 본원적인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순한 일할 권리만이 아니고 그 일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도 아주 기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여러 가지 무슨 노동, 고용 관련된 정책적 쟁점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동일임금 또는 동일보상, 그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논의에서 쓰여왔던 용어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인간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보장받는 기본권으로서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7월 달에 국회의장실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규정에 대해서 이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 양쪽 다 이 조항의 찬성률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근로와 노동에 대한 어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것을 우리가 헌법에서 거론해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헌법이든 법이든 근로하고 노동이라는 말이 의미상으로 차이가 없는데 두 가지 용어가 쓰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우리가 노동삼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로기준법이라고, 노동기준법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근로기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돼 있는 유관기관에 노동복지공단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 있어요. 이게 의미가 다르다면 이 논의가 필요는 없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으로 이 용어를 통일시킬 것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법이 전체적인 법체계에 관한 것이어서 헌법에서 용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법체계로써 이 문제를 수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는 마당이니 근로와 노동 둘 중의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일관된 법체계다, 그리고 이건 헌법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만약에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한다면 근로보다는 노동이 보편적인 용어다, 왜냐하면 ‘근로’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인데 이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수식어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법률적 명사로서는 이런 수식이 들어가 있는 명사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부에서 이것을 혹시 이념적으로 근로와 노동이 어떤 이념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라는 말과 노동이라는 말이 다 일제시대 때 쓰였던 말이고 근로정신대, 일제시대 때부터 대중화됐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도 노동이라는 말을 쓰다가 근로자의 날, 근로 이런 말이 쓰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노동당 해서 조선노동당이라고 쓰지만 북한이 노동이라는 말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도 근로인민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로인민. 그리고 ‘근로자의 힘’ 해 가지고 기관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나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이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는 법체계에서 용어의 통일을 기한다는 점 그리고 용어의 통일을 기한다면 보다 보편적이고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활동을 보편적으로 총칭하는 용어인 노동이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서는 보다 타당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金成泰 위원 우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큰 진화나 발전의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시대의 힘으로 하는 노동 위주의 시절하고 앞으로 융합적인 정신적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4차 산업혁명에 전 세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지적인, 융합적인 이런 부분을 동일노동 동일가치로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또 이것에 대한 동일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융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리고 지금 스티브 잡스의 1시간하고 일반 근로자나 노동자의 1시간하고 이런 것을 동일하게 했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형평화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하향평준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더 평가절하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한 임금을 준다 하는 것은 사람의 창의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역행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 상황·발전이 맞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실제 미래 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헌법이 가야 될 것인데 오히려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부분은 여기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찾아서 넣어야 될 것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헌법이라면. 그런 의견을 일단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근로와 노동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사회 통념상 근로도 쓰이고 노동도 쓰이는데 약간의 그게 다릅니다. 말의 맛이 다릅니다, 뉘앙스가. 그리고 지금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추가자료로 내놓은 데도 보면 근로 어휘의 어원 유래가 1900년(광무4년)에 제정·공포된 ‘훈장조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적이 있고 근로(勤勞)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훈위·훈등을 설치하였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굳이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노동으로 획일화하려는 그런 실제 실익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특히 국민대토론회에 그리고 개헌자유발언대, 개헌특위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많은 의견이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함에 따라 많은 우려를 국민들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굳이 이것을 획일화해서 바꾸자 하는 것은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쟁점이 많은 분야입니다.

강창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협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입니다.

우선은 동일시간 동일임금이 아니고 동일가치 동일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일시간이라고…… 가치는 대개 추상적이지요, 가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1시간과 강창일의 1시간 가치가 전혀 다르지요.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지향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되느냐?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징적·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하고는 전혀…… 뭐 지식산업, 제4차 산업혁명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동일시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명확히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근로하고 노동, 이제 하나로 합쳐야지요. 그런데 ‘근로’라는 말은 내가 소위원회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사회에서 썼던 용어예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노동,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이거예요, 전체주의.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광무 몇 년이지요? 일제가 거의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친일파들이 나라를 갖고 있을 때예요. 이게 식민지 잔재입니다. 아니, 식민지 잔재 청산해야지요. 왜 제국주의 시대 때 썼던 용어를 우리가 그냥 보물단지 모시듯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혼란스럽잖아요. 어떤 데는 노동, 어떤 데는 근로…… 이런 것 보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조선일보’ 했더니 ‘북한의 조선일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게 조선말이라고 해서 빨갱이 아닌가.

근로하고 노동의 문제는 이념으로 들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용어의 문제예요, 용어의 문제. 그런데 근로라고 하면 무슨 보수적이고 노동이라고 하면 진보적,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데, 용어의 혼란성도 피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묶어도 좋은데……

노동은 레이버(labor), ‘일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근로는 ‘국가를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몸을 바쳐서 일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근로를 주장해야 돼요? 그것 잘 이해가 안 돼요.

자문위원님들 말이지요, 어원 같은 것 어떻게 해서 사용됐는지 잘 한번 봐 주세요. 실제 근로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죽 오다 보고 군부독재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근로, 근로’ 이상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강창일 위원님의 근로와 노동의 구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념과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고용노동부’로 쓰고 ‘중앙노동위원회’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도 ‘근로기준법’이라고 쓰다가 하면 ‘노동관계법’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지금 강창일 위원님이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근로라는 개념은 상당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시키는 일이나 묵묵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말고 조용히 일이나 해라’ 이 얘기의 의미로서 전체주의 시대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노동은 좀 더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노조, 영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영혼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의 창의성을, 노동자의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길이고 당연히 노동의 표현으로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동일가치 동일임금 문제는,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이 심각합니다.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60% 임금이 안 됩니다. 5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왜 이것이 거론되는가는 단지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라도 해소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전반적으로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 똑같은 생산라인에 일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은 절반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체계를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정확히 원칙을 명시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노동삼권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하고 일본은 쟁의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군인, 경찰, 교도관을 제외하고 쟁의권을 인정합니다. 단체행동권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단체로 신문에 광고를 실었다 내지는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이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역시, 그러면 공무원은 여전히 계속해서 영혼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적어도 최소한 공무원들도 자기의 판단력들을 갖고, 국정농단 사태에서 발생을 했듯이 위로부터의 부당한 지시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에게 이런 노동기본권은 당연히 보

장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헌법에 반드시 반영해서 공무원 노동삼권 부분은 폭넓게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다른 안보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법률로써 제한하는 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권미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태규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미혁 위원** 저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한 10여 년 전에 이 개념이 나왔을 때 처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자체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동일노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디까지를 동일노동이라고 볼 것이냐라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이걸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발견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일임금 동일노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고요.

저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앞으로 저희가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되면서 인간의 노동하고 로봇이 하는 노동하고 어떻게 가치를 매길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병원에 가면 굉장히 급속도로, 로봇이 수술을 의사보다 훨씬 정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이 한 시간 동안 정교하게 한 그 가치와 의사가 6년간 공부하고 나서 수술한 가치 사이를 필로 재단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공존시대에 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훨씬 더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게 익숙지 않은 것은 이 모델이나 이것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지금 동일가치노동이 도대체 뭔가를 연구해 보려고 하고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는 이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게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너무 실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시대에 우리를

매우 중요하게 뒷받침해 줄 조항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저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와 영역 또 강도와 퀄리티(quality)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저는 임금의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장 또 같은 생산라인에서 노동의 강도와 퀄리티, 내용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차이로 인해서 임금의 격차가 벌어진다 보면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의 경제사회적인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보는데요, 안보적인 측면 외를 빼다면.

그런 측면에서 헌법에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가 그런 가치 또 그런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부분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좀 깨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런 원칙은 반드시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김선수 위원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가 근로삼권, 앞으로 노동삼권이 이렇게 말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근로삼권에서 단결권은 적어도 자유권으로 규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근로삼권에 있어서의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이 부분을 자유권으로 규정하게 됐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자유에 있어서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결사의 자유와 또 단결할 자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김성태 위원님, 김선수 자문위원님 답변을 듣고 하셔도 되겠지요?

김선수 자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자문위원 김선수** 제헌헌법에서는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다 자유권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할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요.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노동자의 경우에 특별한 보호를 위해서 단결권을 보장한다 그런 특별한 보호 이런 부분을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 결성권을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또 단결권을 규정하면서 주체를 노동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서 노동자 결성권을 명시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단결권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법률로, 설립신고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외노조 통보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리 침해하는 조항들을 사회권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런 조항들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헌법정책결정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걸 자유권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국가나 행정관청에 의한 노동자 결성이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 위헌성 판단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와 단결의 자유의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주체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제가 발언……

○**위원장대리 박병석** 이태규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고요.

○**이태규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그러면 어쨌든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라는 것도 전체의 국가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라는 부분은 결국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좀 이해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김선수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김선수** 기본적으로 노조법에도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원칙의 규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헌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이게 사회권으로 보게 될 경우에 제한 가능성 때문에 그것은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그 정도 하시고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뒤에 진선미 위원님 하시고 김종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泰 위원** 동일가치노동하고 동일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부연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대개 보면 분업화된 형태의, 동일한 형태의 구분이 상당히 가능하고 또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당연한 것은, 단순하고 구분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대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이 당연한 것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향후에, 지금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과정에 생기는 현상은 다양한 일들을, 멀티 태스크 멀티 플레이어(multi task multi player)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창의성이 상당히 발휘되는 부분하고 또 예를 들어서 로봇하고…… 대개 로봇이 따로 혼자 일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수술을 한다든가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가는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화, 앞으로 창의성이나 멀티 플레이어나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될 텐데 이것을 굳이 개정 헌법에 넣어서 과거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헌법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명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로·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유래가 어떻게 됐든 그 사회의 통념상 쓰고 있는 수용 가능성 또 통용성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공청회나 개헌발언대나 또는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자고 대다수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바꾸는 실익이 없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 의견으로서 저는 다시 강조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진선미 위원님께서 김종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도록 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먼저 근로와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용어가, 이게 아주 기본적인 필요성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는 근로를 쓰든 노동을 쓰든 그것은 본인들의 역사적 경험이나 아니면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어요. 문제는 법에서는 의미가 다르면 다른 용어를 써야 되고 만약에 의미가 다르지 않다면 같은 용어를 쓰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법에, 헌법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법에도 그렇고 노동과 근로가 다른 의미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와 노동의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르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상용어로 우리가 통일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상용어는 학문적인 토론을 하든 글을 쓰든 아니면 수필을 쓸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살려서. 하지만 법률용어는 통일시키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미래 지향적인 취지에서 볼 때 조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의 반론을 퍼셨는데 이게 왜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서 논의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의 큰 체계는 하나는 대의민주주의를 체계로 한 정치체제, 자유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 이 두 가지 축의 원칙과 방향을 정리해 놓은 게 우리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이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라는 두 축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항과 규정들을 만들어 내지만 여러 조항에도 불구하고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권리를 정해 놓고 이것은 절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권 조항을 앞에 내세운 겁니다.

이 기본권에 대해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아무리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더라도 이것은 침해하지 마라, 시장경제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 가지 자유를 주더라도 이것은 침해하지 마라,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시장경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결국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자유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그런 질서인데, 그 자본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을 좀 하자는 건데요.

우리 이미 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에 일할 권리가 있어요. 근로의 권리 이게 기본권입니다. 근로의 권리는 침해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본의 자유가, 시장경제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헌법의 원칙입니다.

일할 권리만 있으면 뭐 합니까? 옛날에는 일을 하면 보상이라는 것은 시간에 비례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아까 말씀대로 10분을 일하고도 1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1년을 일하고도 10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경제에서 일에 대한 가치가 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대비 똑같이 보상하자는 게 아니고, 시장경제가 그런 보상을 평가하는 방식들은 자유롭게 하되 기본적으로 동일 가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누구와 친하느냐 안 친하느냐 또는 얼마나 일했느냐 이걸 가지고 보상을 달리하는 이런 편파적인 혹은 차별은 없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것은 새롭게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근로의 권리를 내용적으로 보장하면서, 일할 권리만이 아니고 일한 것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도 기본권에서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근로의 권리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차원의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맞추어서 자유시장경제가 인간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적인 명령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뒤에 웬만하면 이 분야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 다음으로 갔으면 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진선미 위원** 지진이라는 현안 때문에 상임위가 있는데 또 여기 와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참

마음이 바쁘네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니깐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실은 중요한 전문·총장·기본권 부분이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지금 이 시점의 특수성을 좀 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6·10 항쟁이 있던 87년에 개헌이 있었고 그 이후로 거의 30년 만에 맞이하는 개헌의 지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하라는 것에 대한 공감을 좀 형성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 사회권적 기본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 진행돼서 2018년에 마무리하게 될 이 개헌의 어떤 특징을 규정지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분들께서 함께 의견을 모아 주시고, 또 그 보고서들을 만들어 주신 내용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동의 권리라는 부분이, 제가 그 자문보고서를 보니까 아마 자문위원들께서 아동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고 계시고 또 의원님들도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실제로 아동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출산의 심각성이 고려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동의 권리를, 권리의 주체로 집중해야만 그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동의 권리라는 것이 이번에 이 헌법에서 반드시 명시가 돼서…… 실제로 스위스나 유럽 같은 데서는 아동이 본인이 태어나게 된 환경, 부모의 모습, 이 모든 것들과 무관하게 본인의 생존과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보인권에 대한 부분도 많은 것들이 놓쳐져서 그냥 간단하게 의견을 좀 담고 싶습니다.

자꾸만 정보화 사회에 대한 어떤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정보인권들이 계속 무시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로 변화돼 가는 환경에 걸맞게 정보인권도 이번에 반드시 강화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면 좋

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환경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세먼지나 전체적인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대체 개인이 가지는, 이 소소한 환경변화가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범위에서 더 넘어서서 개인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환경권이라는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진선미 위원님, 지진 때문에 행안위 상임위하고 같이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돈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근로의 권리’ ‘근로자’ 이렇게 쓰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노동자’ ‘노동인권’ 쓰지 ‘근로인권’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더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5월 1일은 아직 까지도 근로자의 날로 돼 있고 또 미국은 이 5월 1일을 갖다가 법의 날로 정하고 노동절을 가을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과 북한에서 5월 1일을 일종의 혁명 기념일처럼 기렸던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남아 있는 건데요.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헌법과 법률의 모든 ‘근로’를 ‘노동’으로 자신 있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도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할 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바꾸는 것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는 좀 신중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같은 것도 선언적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일단 써 넣게 되면 그것에 위반된다고 해서 소송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똑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흑자 기업인 H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봉급 많이 받고 적자 기업인 S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조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똑같은 증권회사, 똑같은 조선회사도 말이지요, 조선회사에서 똑같은 동일가치노동을 하는데 어떤 흑자 조선사는 보너스까지 받고 적자 조선사는 임금 삭감도 하고 오히려 직장을 잃어버릴 상황 속에 있는데 과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렇게 강제성을 떨 수 있는 헌법 규정에 넣을 수 있는 건지, 그것 삽입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석** 김종민 위원님,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김종민 위원** 예, 짧게……

이상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회사에서 회사의 실적이 다른데 같은 일을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임금을 같이 주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한 것이고요. 이 기본 취지는 차별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구체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취지가 뭐냐에 따라서 법률이라든가 현실에서 적용을 하는 과정이 방향이 잡히는 거니까 기본 취지가 경쟁을 제한해서 획일화시키자는 게 아니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동일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것은 차별에 대한 제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金成泰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짧게.

○**위원장대리 박병석** 김성태 위원님 짧게 하시고, 노동삼권 근로의 문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金成泰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그런 선언적 의미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평등의 조항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다양한 형태의 환경과 기술 변화나 또는 사회 발전의 트렌드로 볼 때는 가장 정확하게 임금, 노동의 질과 가치, 그에 대응하는 임금의 결정은 우리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병석 위원, 이주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이 만약에 공정하게 되지 못하면 하여튼 공정한 어떤 거기에 대한 것을 엄중하게 물을 일이지 이것을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헌법에 한 조항 넣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이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에 비추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영** 말씀하시겠어요?

박태순 자문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문위원 박태순** 오늘이 기본권 두 번째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직접민주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차원에서 합동회의를 구성해서 내용을 오늘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자료에는 직접민주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집중토론 하는 과정에서 직접민주제에 대한 별도의 논의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것은 참정권의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요. 국민들이 정말로 관심이 높은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직접민주주의에 관해서 논의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거든요. 정말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위원장 이주영** 박태순 자문위원님 지적해 주신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국민발안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부형태에 관한 입법부의 입법권과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기본권 끝나면 정부형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숙지하시고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보고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논의 구조에서 입법권 부분에 그게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문위원 박태순** 물론 지금 하신 말씀을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권에 넣어야 될 것과 입법권이나 대통령 장에 넣어야 될 것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기본적인 직접민주제 3권에 관해서는 기본권에 담고 그리고 정부형태와

관련된 것은 정부형태로……

○**위원장 이주영**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박태순 자문위원님 말씀하신 직접민주주의에 관계되는 아까 김선수 자문위원님이 보고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자 의견도 좋으시고 또 자문위원님께 질의하셔서 답변 듣는 그런 형식의 토론도 좋고.

예, 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영** 예, 이상돈 위원님, 뭐 발언하실……

○**이상돈 위원** 발안제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주영** 여기 자문위원회 ‘직접민주제 관련 합동회의 결과’라고 오늘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돈 위원** 이 부분을 2분과에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영** 예, 그러니까 정부형태·입법권 부분의 분과소위원회 회의할 때도……

○**이상돈 위원** 많이 했어요.

○**위원장 이주영** 충분히 논의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배포된 자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숙지하시고 그때 가서 논의하면 좋겠다 하는데 굳이 또 오늘 기본권 차원에서의 접근 이것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것을 억지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종섭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신필균 자문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鄭宗燮 위원** 이 문제가 정부형태 논의할 때 이미 소위원회에서 됐지만 지금 자문위원 입장에서는 오늘 자료를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하고……

○**위원장 이주영** 그렇지요. 예, 하시지요.

○**鄭宗燮 위원** 이 논의는 그때 하든지……

○**위원장 이주영** 또 하고.

○**鄭宗燮 위원** 아니면 지금 하고 그때는 다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제출하신 입장에서 좀 요약된 형태로 잠깐 나오셔서 가지고 그날 논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듣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영** 그러면 박태순 위원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하세요.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나오실 필요 없고요.

하시고, 그다음에 신필균 자문위원님, 또 혹시 들어 보시고 보충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들이 다 토론 내용에 제약을 가하고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다 확보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문위원 박태순**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 쪽에서는 오늘 기본권 논의를 두 번째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직접민주제에 관한 부분을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돼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 이주영** 예, 좋습니다. 말씀 주시지요.

○**자문위원 박태순** 이 자료 아까 못 들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정말로 간단하게만, 5분 이내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분과뿐만 아니라 사법분과까지 12명의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근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집중적인 논의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 공통된 내용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은 국민발안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1 이상으로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그 법률안은 확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국회가 그 법률안을 거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국민이 발안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법률안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회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발안한 법률안과 경합’하도록 했고요.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이렇게 논의 결과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국민투표권과 관련해서요. ‘국민은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1 이상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주요 정책의 결정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이 내용까지는 기본권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정리를 한 거고요.

5페이지, 72조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 부의권

존치 여부에 관해서는 이것은 대통령(정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거기서 논의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는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7페이지입니다.

국회 의결에 의한 국민투표 부의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국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는 국회에 2년 이상 계류 중인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민소환 관련된 내용에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1 이상은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소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소환은 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투표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및 법률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소환이 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헌법 개정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행 헌법과 같이 “헌법개정”의 별도의 장으로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면, 9페이지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2 이상이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 ‘국회의원선거권자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국회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발안한 헌법안과 경합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페이지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은 국회도 할 수 있지만 국민도 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역시 지금처럼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발의권을 계속 부여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신필균 위원님, 뭐 하실 말씀 따로 안 계시고요?

여기 지금 박태순 자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직접민주제에 관계되는 법률안 국민발안권이라든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 제도 또 국민투표, 국민소환권 제도 도입 등등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

여기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국회 입법권, 헌법 개정 절차 등에 가면 또 관련되는 쟁점들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 가서도 논의 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특위 위원님들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들어 보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우선 이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직접민주제와 관련해서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이것을 참정권으로 규정하고 기본권 영역에다가 규범화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조문화하는 거나 아니면 절차적인 규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후의 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을 기본권 과정에 두자는 것과 그 다음에 입법 영역에, 국회의 영역에 두자는 것 혹은 그 뒤에 다른 체계 속에다가 이것을 포함하자는 것은 곧 그런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 군데 다 두자는 건지, 아니면 여기다 두자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두고 거기도 둔다고 그럴 때 여기다 두는 것에 특별한 의미나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조문이나 절차적 규정 문제는 이 뒤에 또 다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우선 그 점에 포커스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대요.

○자문위원 박태순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주권 실현 차원에서 대의제를 통한 방법과 직접민주제를 통한 방법이 있다고 봤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의면 발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에 넣어야 될 것은 100분의 1이든 어쨌든 간에 그 발의의 주체가 국민인 경우에는 그것은 기본권에 넣는 것이 맞고, 국회의원이 발의의 주체인 경우에는 그것이 국민투표라 하더라도 입법부의 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건 대통령 장에다 넣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법심의관 이지민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사회적 기본권 나머지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보장제도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할 것인지의 여부인데, 신설에 찬성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현행 '신체장애자' 표현을 '장애인'으로 수정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현행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여자·노인·청소년에 관한 조항을 평등에 관한 절로 이동할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인·청소년 관련 편제는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권을 신설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조문 순서 변경에 관한 논의입니다.

현행은 사회적 기본권 조문 순서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 규정인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앞으로 배치하는 등 조문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문 순서 변경에 찬성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 환경권입니다.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 및 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권 측면에서 환경권과 환경보전 의무를 분리하여 규정하되 환경보전 의무에는 국가적 지향성, 예를 들면 지속가능성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35조 2항 규정을 삭제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의무 규정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함께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개발정책'이라는 표현을 헌법에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입니다.

먼저, 아동(어린이)의 복지·권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의 학대방지 외에도 소외, 차별금지 등의 강력한 지향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노인의 권리와 장애인의 권리를 별도로 조항으로 명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건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별도의 권리로서 명시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셨고, 현행 35조 1항의 건강 관련 내용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도 있었습니다.

다음,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현행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외에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소비행위 제도'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문화생활 향유권 신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지금 심의관계서 보고하신 쟁점들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태규 위원** 이견 자문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자문위원회에서 제기한 대로 우리 헌법이 아동(어린이)의 권리를 여기 명시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또 자기가 어떤 주체, 자아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이것을 보호할 의무 이런 부분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아직까지는 우리 헌법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청소년에 관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실습생이 사고가 났고 또 지난번에 구의역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도 고등학교 실습생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의 노동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들을 보호해야 될 국가나 사회의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문위원 김선수** 지금 현재 헌법에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소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는 18세 미만도 있고 15세 미만도 있고 법률마다 연령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또 대체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형태로 규정한 것은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하는 계기로 되고 피동적인, 보호가 필요한 그런 대상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형태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현재로서는 소수자 권리 조항을 신설하는 데서 아동의 권리 조항을 별도로 해서 규정하는 그 정도로 했고, 노동 부분을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한다’ 이런 형태의 규정 방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헌법에서 그런 부분 예정해서 특별히 규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입법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저는 뭘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헌법에 국가나 사회가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언제 한번 논의가 있었는지, 이게 헌법에 명시가 안 된다면 법률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문적인 의견을 조금 여쭙본 것입니다.

○**자문위원 김선수** 저희가 헌법에 충분히 4개 조항으로 아동의 권리 조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입법화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영** 신필균 자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보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논의한 것의 초점은 사실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의 연령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연령이 각기 다른 게 최소한도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나눌 것이냐 아니면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18세 미만을 무조건 아동이라고 한다면—그게 아동권리협약의 정의지요.—그럴 경우라면 아동의 권리 속에서 모든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될 충분한 규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고등학생들의 사고는 어디까지나 실습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그것은 사회 진출, 성인으로서 나가기 위한 교육 방법의 하나로서 철저하게 사회가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동권에서 이미 포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유엔권리협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연령에서 불분명하다면 성인인지 아동인지 권리에서의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기회에 아동의 권리, 아동이라는 개념도 분명히 국회에서 정의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하위 법령들이 차츰 연령도 다를 수

있고 기본적인 권리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선거권이 성인이 1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서히 발전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서, 그래서 그 두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동권을 분명하게 정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근로의 문제는 이게 아동으로서의 훈련 과정에 받는 거지요. 물론 청소년도 근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국제적으로도 어느 나라는 16세, 15세, 14세부터 있을 때 그때 특별한 것은 아마 하위법에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태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구분이나 이런 부분을 유엔 기준에 맞추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유엔 기준으로 해서 아동이라고 봤을 적에 이 아동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훈련이고 실습 과정인데, 사실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실습 과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장 일반 노동자보다도 더 혹독하게 노동을 착취당했다는 자료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은 노동을 강요한 거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노동부서나 또 실습생이면 교육 당국이나 모두가 다 방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와 사회가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아무런 책무를 안 한 것이다 이런 측면이 어떻게든지 이번 헌법정신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예.

○**자문위원 김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주영** 예, 김선수 자문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자문위원 김선수** 저희가 만든 아동의 권리 조항 보면 제3항에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4항으로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그걸 구체화하는 법률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영** 권미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미혁 위원** 여기 45쪽의 환경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 내용으로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 및 국민의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의미가 기존 현행 헌법에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속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바라볼 때 조금 더 기본권을, 즉 국민의 권리를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강화하려고 하면 조문을 기존 조문보다는 굉장히 잘 다듬어서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동물권이 아니면 여러 가지 생명체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다만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국가한테만 줄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나 공동체에 같이 의무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국가 부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강조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약간의 고민은 좀 필요하다, 공동체도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발안제라든지 그 내용은 이후에 입법과 관련된 영역에서 다루기는 할 건데 이 부분을 참정권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金成泰 위원** 자문위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동의 문제는 사실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아동 착취의 사례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례가 아마 먼저 이루어졌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상에 명시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한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추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나라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김선수 일단 기본권과 관련해서 가장 선진적인 입법례라고 하는 것을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24조로 해 가지고 아동 권리를 거의 3개 항으로 아주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조한 것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참조를 했구요. 그다음에……

○金成泰 위원 EU법?

○자문위원 김선수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그러니까 유럽연합 헌장이지요. 그리고 유엔에서 권리협약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는데 아동권리협약도 유엔에서 채택을 해서 되어 있고……

○金成泰 위원 개별 국가는 없습니까?

○자문위원 김선수 개별 국가는 제가 별도로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金成泰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에 물론 당연히, 우리 헌법 수준하고…… 우리 법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헌법으로 또 올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별로 일일이 다 들어가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나 헌법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헌법까지 계속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도 더 요구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자문위원 김선수 아니, 그래도 유엔이 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들은 저희가 개헌 하는 마당이라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아동은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될 그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것의 당위성을 인정을 하되 우리가 헌법을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주영 지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자문위원님께 외국의 헌법 입법례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상세 자료에도 외국의 헌법 입법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그리고 정종섭 위원님 하시기 전에, 여기 자문위 보고에도 나온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것까지 여기 요약보고서에 다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컨대 ‘신체장애자’ 이것을 ‘장애인’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자문위 보고서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하면 그런 의견도 앞으로 올려주세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예, 그렇게 올려 주시고.

정종섭 위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 하셨으니까요 말씀 듣고 그다음에 신필균 자문위원님께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鄭宗燮 위원 이것은 1소위 쪽에다가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1소위 위원님들이 지금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상의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꼭 무상교육인 것으로 지금 이것이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념으로 보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 부모에게 자녀를 반드시 학교에 보내게 하고 강제규정인데 지금은 워낙에 발전된 이런 사회에서 자녀가 학교 교육에 적응을 못 한다, 그렇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부모로 하여금 강제로 학교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맞겠느냐, 더욱더 학교 교육 아닌 다른 좋은 방법, 홈스쿨링도 있을 것이고 홈스쿨링 이외의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의무 문제와 무상 문제는 분리시켜서 검토를 해 주신 논의가 있는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상교육 문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학까지 전부 무상교육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헌법에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까지는 무상교육이고 그다음에는 상황을 보면서 대학까지 늘린다 하면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무상의 규정하고 의무교육 문제 이 문제하고 별개인데 우리 헌법에는 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 개념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소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하셨는지?

그래서 1소위의 위원님 안 계시면 자문위원님들 중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하든가 검토를 하신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 거기에 저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종합해서 말씀주셔도 좋고요.

신필균 자문위원님 말씀하시겠다고……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영 먼저 하시고요……

어떻게 할까요?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대답을……

○위원장 이주영 그러면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실까요?

김선수 자문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신필균 자문위원님으로 발언권 넘기겠습니다.

○자문위원 김선수 정종섭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자문위 자체보다는 제가 토론회를 할 때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이 ‘국가 교육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며 강제적인 경우 모든 교육활동은 무상을 전제로 해야 된다’ 해 갖고 여기, 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헌법상으로 반영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그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의무교육의 범위를 지금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학제 개편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법률로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가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질 제고와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의 의무를 추가하는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정종섭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鄭宗燮 위원 예.

○위원장 이주영 발언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필균 자문위원님, 아까 하실 말씀 하십시오.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그 말씀에 이어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넣은 이유는 외국 사례에서는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는 나라도 있고,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법률을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구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까 아동권에 대해서 다른 헌법에 이런 것이 있냐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제안한 것 같이 네 향으로 돼 있는, 그렇게 자상하게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유럽 국가들은 ‘아동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하는 조항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조에 나와 있고요. 그런 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권리협약에 사인을 한 국가들은 대부분이 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그 협약에 따르는 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아동권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에 조인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에 대한 개념 하나 지금 분명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에는 그것을 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희는 좀 자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시대적 환경을 반영해서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아동권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이왕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에 의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현행 헌법 위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행 헌법 제34조의 문제점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은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11조가 천명한 평등주의 원칙이 여성이나 장애인·청소년·아동·노인은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변하고 있고 굉장히 보호주의적인 성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경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유신헌법에서 만들어,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가 유신헌법에서 만들어졌고 ‘사회복지’ 단어가 들어간 것은 80년대 개정 헌법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너무 모호해서 지금까지 절대로 기본법의 근거조항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도 볼 수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어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개헌에서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34조는 정말로 이번 10차 개헌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김선수 위원께서 보고하실 때 내놓으신 그 안대로 이제, 만약에 장애인·청소년·여성 문제를 여기서 분리시킬 경우에는 그 내용을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을 국가가 증진할 의무로만 내놓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변경돼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정말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또 다시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든가 의료원 폐쇄 사건이 지역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근거조항으로서 제대로 기본법이 실효성을 거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그러면……

○자문위원 염형철 염형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염형철 자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자문위원 염형철 한 번도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충분히 하십시오, 제한 없이.

○자문위원 염형철 중앙일보에서 최근에 시리즈

물로 기본권과 관련해서 개헌의 주요 내용을 다뤘었는데 그 순서를 보면 환경과 관련한 권리가 굉장히 높은 순서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막상 개헌 과정에서는 환경권 관련한 논의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논의에서 혹 누락하고 있다가 마지막에서는 또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취지를 조금만 설명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마련한 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전문이나 또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 35조에 포함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환경권 조항이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공유권으로서 그리고 또 향유권으로서 그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37조 1항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의 숫자가 1000만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물단체들을 비롯해서 환경단체들의 관련한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비롯한 자연보호, 생명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라는 부분들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세계적인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충돌이 대단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서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헌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경국가로서의 목표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구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자문위원회에서 의견 모았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또 의견 말씀 주실 분……

안 계시면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심의관 보고해 주시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입법심의회관 이지민 다음은 기본 의무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국민의 헌법 수호 및 법률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준수는 당연한 것이므로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유와 권리 남용 금지 의무 신설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와 권리 남용 금지 의무 신설 시 위 1번의 헌법 수호 및 법률 준수 의무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의무와 관련한 규정들을 한데 모아서 별도의 절로 재편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의 의무 등 일부 의무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반드시, 이 부분뿐 아니라 제가 좀……

우리나라 헌법의 32조·33조·34조 같은 것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참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 보면 이 헌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굉장히 절실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32조 5항에 보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그 시점에 연소자들이 얼마나 많이 노동을 했기에 이런 조항이 들어갔겠습니까? 지금은 연소자가, 18세 이하는 근로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34조에서도 아까 신필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수동, 보호적으로 되어 있지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런 조항이라도 이렇게 헌법에다 넣었다는 것이 하나의 천명한 것으로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35조 같은 것도 지금 보면 미흡해서 또 염형철 사무총장 말대로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 같은 것 반영되지만 35조가 처음 들어왔던 81년 헌법에는, 전 세계에서 헌법에 환경 들어간 게 우리나라가 아마 처음이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헌법 조항이란 것은 시

대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환경권 조항 같은 것은 아까 염형철 총장 말씀하신 대로 리우선언이나 이런 데 또 지속가능성 이런 것이 좀 얼마나 반영됐나 모르겠습니다, 초안에.

그리고 저는 특히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같은 것은 이제는 좀 헌법에서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는지 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도 여성의 권리가 평등권이 증진되면 사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여성이 너무 한심한 데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그래서 바로 저희는 지금 현행 34조 3항에서 5항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삭제를 하고, 여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평등권으로 조항을 옮겨서 아까 많은 논쟁이 있었던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조항이나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없어지는 게 옳다고 보고요. 노인이나 장애인도 별개의 조항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2항을 국가의 의무에서 권리로 바꿔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사회보장의 권리가 있다’로. 지금 대부분의 사회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로 변경을 하는데 저희가 제안드린 것은 좀 더 구체화시킨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자료를 살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인간다운 권리 안에, 인간다운 게 뭐냐 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것이 사회보장의 권리의 내용으로 포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권도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을 선호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건의료 서비스도 사회보장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근거조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건권도 3항으로 들어가고, 주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4항 그리고 5항으로 문화까지 저희가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돈 위원 제가 1소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1소위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사실 32조·33조·34조 같은 조항이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金成泰 위원** 자문위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기본 의무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에 이 의무를 질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납세 의무나 또 교육의 의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의무 대상으로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의무교육의 대상이 ‘국민’에서 ‘사람’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 건지, 아니면 납세도 마찬가지로, 납세도 국민이 납세하는 경우와 또 우리나라 전체에 거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요?

○**위원장 이주영** 김선수 자문위원님,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위 분과소위에서 논의돼 가지고 올라온 쟁점으로 아까 심의관계서 보고하신 건데 자문위에서 혹시 논의된 게……

○**자문위원 김선수** 저희 분과에서 정리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국민’이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역시 저는 ‘국민’으로 했습니다. ‘국민’으로 했고, 그다음에 납세의 의무는 ‘사람’으로 했는데 그것은 외국인도 국내에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러면 교육의 경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으로 정리가……

○**자문위원 김선수** 예, 저희 개정안에서는 일단은 ‘국민’으로 했는데 그런데 아동의 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화의 추세에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다수의견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을 의무를 국민에

게 부과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교육시킬 의무는 국가에게 부담시키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히려 ‘사람’으로 확대해서 외국인의 자녀들이 국내에 있는 한은 또 역시 보호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은 현재의 규정대로 국민의 의무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그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됐습니다.

○**金成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정종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鄭宗燮 위원** 아까 문제가 되었던 31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크게 보면 모든 기본권이 다 여기에 해당돼야,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자유·평등·복지 모든 것을 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학자들 중에도 사실상 이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안 갖는 것이고 오히려 구체적 경우에 맞는 그런 개별 기본권에 의해서 사실은 실현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34조 같은 경우가 이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마이너리티(minority)에 대한 특별 보호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아까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특별히 규정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것이 국가후견주의적인 그런 뉘앙스로 읽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조 평등 쪽으로 가서 연령 혹은 장애 이걸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하는 그쪽으로 다 모으고, 특히 마이너리티의 경우에는 차별받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 이상으로 배려를 해 줘야만이 그것이 차별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사실 개별 법률사항에서 구체화되겠지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것은 지금 와서는 좀 더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체계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는 제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환경권 조항은 원래 들어갈 때는, 독일에서도 이게 굉장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권 자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 이론적으로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보호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이

살아갈 것인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이걸 규정을 해야만이 이게 될 것인가, 이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사실은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레벨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전체가 같이 향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개인에게 전부 권리로 나눠 줬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쟁점이 있어서 이게 지금 법학 이론에서도 상당히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으로 내려가서 일조권·조망권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보장을 하는데 일조권·조망권이 과연 환경권이나 이런 문제도 또 여전히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서 독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이 살 수 있도록 의무를, 그렇게 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또 환경보호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만들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이다 이렇게 해서 권리 개념으로 안 가는 그런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대단히 앞서서 지금 규정을 해 봤기 때문에 이 제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보다 이것 위에 더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이념적 가치 그것을 조금 더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것이 두텁게 인정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저도 그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고문현 자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자문위원 고문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과 정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상돈 위원님께서 환경법의 대가이시기도 한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환경권이 1980년 8차 개헌 때 들어갔는데 이상돈 위원님께서 처음이다시피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니고 1978년 스페인 헌법에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세계에 정말로 혁명적인데 다른 나라에 있던 것을 돌아가신 구연창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하셨던 권숙표 교수님 그리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서울대학교 노유희 교수님 등 3명이 공동으로 정부에다가 안을 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제가 노유희 교수님하고 권숙표 교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정종섭 위원님께서 독일에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에 그쪽에 관한 자세한 논의가 들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보전 그렇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국가의 목표 그래서 독일기본법 20a조에 23년 동안 기본권의 형태로 할 것인가, 국가의 목표로 할 것인가 논란을 하다가 국가목표 형태로, 왜 그런가 하면 독일기본법 제1조 3항에 보면 ‘본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입법·집행·사법에 대한 직접 구속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독일기본법 1조 3항과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인 환경권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권은 아시다시피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직접 국가기관을 구속하지 못해서 추상적 권리로 생기는 것이 다수설이고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독일기본법 1조 3항 체계에 따라서 독일 사람들은 기본권 형태로 규정하지 못하고 국가목표 형태로 규정하면서 1조 3항과의 조화를 맞춰 나가구요.

조금 전에 염형철 위원님 등이 동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원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기에 독일에서는 동물보호를 독일기본법 1조에다가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독일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동물에 대한 존경,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독일기본법 1조에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독일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동물이 인간과 똑같이 존엄하냐 이렇게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 동물의 존엄 조항이 돌다가 돌다가 20a조에, 환경보호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2002년에 개정할 때, 독일에서 국가목표로 들어간 건 94년 개정 42차 개헌 때 들어간 거구요. 2002년 51차 개헌에는 20a조에, 94년에 개정할 때는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더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해서 동물이 20a조에 들어가 있

고요.

그래서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환경 조항에 동물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비교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권미혁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을 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이종걸 위원님 발언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미혁 위원 지나가기는 했는데 저는 아동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동권이 저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동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동수당을 가지고 논쟁을 했을 때 상위 부자 아동까지 줘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거의 잘 활용되지 않고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권 차원에서라도 줘야 된다 이런 논의들도 사실 있었고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 자문위 의견 조항을 보면 16조 1항·3항·4항이 다 아동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방임과 폭력·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2항 같은 경우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동권이라고 하면 2항이 제일 먼저 나오고 뒤에 보완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의 고민은 어쨌든 아동·청소년·노인같이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과연 이 2항과 나머지 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아이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서 아동권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문위원회에서 이미 자문과 관련된 게 다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 조항 부분, 아동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더 논의가 깊이 돼야 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아동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히 주장하지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거기에 대해서 자문위원님 하

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신필균 자문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 안 계시면 안 하셔도…… 우리 권미혁 위원님 의견으로……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이 바뀌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라는 게 앞에 나온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아동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체를 인정하지만 일단 아동이라는 게 바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자체, 그런데 그 목적은 아동이 행복해야 되는 이게 우선 순위를 뒤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결정권이 참 어려운 용어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자기결정권이 예를 들면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든가 혹은 아동을 중심으로 보호자의 권리, 보호자를 책정할 때 이럴 때에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이종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걸 위원 논의가 다 진행이 됐고, 마지막에 기본 의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 몇 가지 의견이 나뉘지는 점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 헌법에 있는 의무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기본 의무를 새로 넣는, 예컨대 남용 금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권 조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서 적절치 않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의무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기본권 충돌과 관련된 다른 권리의 이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미 헌법상의 이론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의무에 있어서 기본 의무를 더 추가한다거나 기본권 충돌의 다른 측면을 규정하고 있는 의무 내용을 또 보완한다든지 이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존의 의무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 뭐 병역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구체화될 수 있는 기존의 의무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보면 김선수 자문위원의 발표 내용이 대

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정중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鄭宗燮 위원 거기 의무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지금 논의에 보면 앞에 있는 인간, 영어에서의 ‘human’을 ‘사람’으로 바꾸자 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모든 휴먼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외국인에 대한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법률적 레벨에서 외국인에게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을 ‘사람’으로 바꿔 놓으면 외국인, 외국법인…… 이 ‘사람’ 안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법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들을 다 검토하고 이런 결과, 의견들이 온 건지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이 질문은……

심의관이 좀 아세요, 여기 쟁점 사항에 올려놓은 그 내용들 어떻게 올라온 건지?

이게 의무에 대해서 쟁점으로 제시는 했지만 별다른 의견 개진이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의무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 의견 제시는 다 없었거든요.

○입법심의회관 이지민 예, 2014년……

○위원장 이주영 그런데 거기에 쟁점으로 올라온 것은 2013년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그 안이다 해서 쟁점으로 올렸던 거지요?

○입법심의회관 이지민 예.

○위원장 이주영 그리고 그렇게 올릴 때에 지금 정중섭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국민의 의무라고 하면 4대 의무 해 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납세의무, 국방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다 논의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그 자료에 상세히 기재가 잘 되어 있던가요?

○입법심의회관 이지민 예, 2014년 자문위안에서는요 납세의 의무, 헌법 수호 및 법률 준수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에 대해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자는……

○위원장 이주영 전반적으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입법심의회관 이지민 예, 지금 말씀드린 이 4개에 한해서 ‘사람’으로 바꾸자는 의견이었고요. 소위 차원에서는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그러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金成泰 위원 그 부분……

○위원장 이주영 김성태 위원님.

○金成泰 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영 예, 말씀하십시오.

자유롭게 편하게 좀 하십시오.

○金成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논의가 충분히 안 됐고 또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나 분석을 하지 않은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주영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헌법 입법례들을 좀 참고도 해 가면서 다음에 논의할 때는 좀 입체적인 그런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또 다른 사항 없습니까?

그리고 이왕 얘기하는 김에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실에서 개헌 주요의제 쟁점 사항을 요약·보고하는 그런 것하고 또 상세 보고라고 이렇게 해서 올려 주셨는데 리뷰를 죽 이렇게 해 보는 가운데 각계의 의견들이 충분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자문위원회가 최근에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정리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고충도 있었으리라고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나오는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충실하게, ‘자문위 검토 의견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대토론회 과정 또 ‘개헌 나도 한마디’ 이런 데를 통해서 국민들 의견으로 제시되는 부분들 또 홈페이지에 의견 제시되는 그런 내용들 또 지금 각계에서 개헌을 할

때 이런 이런 내용들을 헌법에 담아 줬으면 좋겠다 하고 가지고 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 농협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적인 진흥·장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겠다 또 수협은 수협대로 수산에 관한 국가적인 보호 또 국가적인 어떤 의무 차원에서 그런 정책 추진의 선언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각계에서 이런 의견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을 찾아서 그런 제안서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두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 개헌 의제에 전부 반영을 다 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전부 우리가 무슨 거기에 경중을 두고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 올려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의 입법례도 참고하고 또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들, 찬반 또 학설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새로운 헌법을 내놓을 때는 완성도가 높은,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헌법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다 끝났지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안 계시면 회의를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청가 위원(6인)

강효상 백재현 이채익 이철우
천정배 하태경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한 공 식
입법심의관 이 지 민
입법심의관 장 지 원

○출석 자문위원

고문현(기본권총강분과)
김선수(기본권총강분과)
김은경(기본권총강분과)
김창수(기본권총강분과)
박순성(기본권총강분과)
박태순(기본권총강분과)
신필균(기본권총강분과간사)
염형철(기본권총강분과)
정성현(기본권총강분과)
조소영(기본권총강분과)

○출석 위원(23인)

강창일	권미혁	김경협	金成泰
김정훈	김종민	노회찬	박병석
성일종	이상돈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태규
전해철	전현희	정용기	정종섭
진선미	최교일	최인호	